

2022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및 참석자

1. 일시 : 2022. 4. 22. (금) 09:00
2.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
3. 참석 위원(총9명 전원 참석)
 - 가. 교직원대표 : 위원장 임효창 기획처장, 정소연 학생·인재개발처장, 하성호 경영기획팀장
 - 나. 학생대표 : 추시연 총학생회장, 유상아 부총학생회장, 허예진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다. 외부전문가 : 김문규 회계사, 최애라 회계사
 - 라. 동문대표 : 최형심 총동창회장

■ 안건

1. 의사 진행 관련
2. 2021학년도 자금결산(안) 심의
3.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4. 기타

■ 내용

1. 의사 진행 관련

- 안건에 대해 거수 등의 명확한 의사 표현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 기존의 회의 진행 방식과 같이 의견 제시 후 이견이 없을 경우 동의 제청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과 찬성과 반대를 거수 또는 비표로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안건과 그렇지 않은 안건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안건을 찬성과 반대의 의사 표현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안건 별 동의 제청 또는 찬성과 반대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가?
- 예산(안)과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찬성과 반대의 투표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 찬성과 반대의 투표 형식이면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대립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비밀 투표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2. 2021학년도 자금결산(안) 심의

재무팀장이 2021학년도 자금결산(안) 세입과 세출을 설명하다.

○ 학생지원비 예산편성액 대비 결산액이 약 1.4억 원 줄었다. 줄어든 예산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지원비 또는 휴게시설 확충 및 시설 보수 등의 내용으로 사용 될 수 있는가?

- 미집행된 예산은 이월 사유가 있을 경우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잔액은 적립한다. 적립한 예산은 사업 필요 시 인출하여 사용한다. 미사용된 예산을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산은 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배정한다. 결산액 대비 많이 편성된 예산 즉, 불용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실험실습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좋겠다.

- 본부, 재정지원사업 및 학과에서 사용하는 실험실습비가 있는데 매년 6월부터 본인 소속 학과의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진행 예정이다.

위원장이 2021학년도 자금결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3.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경영기획팀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위원이 아닌 자의 회의 참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안건 설명을 위한 관련자 참석은 현행과 동일 방식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 위원이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규정 개정(안) 제6조 1항의 내용과 제2항의 어느 부분이 상충되는지 설명을 바란다.

- 제1항의 「2회 이상」은 2회 이상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1회에 모든 안건이 합의되어 회의가 종료된 경우가 많았다. 1회 회의에서 의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2회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 제2항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가 진행 될 수 있으므로 헷수에 대한 부분이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 학생 위원 입장은 2회 진행한 회의를 1회로 줄이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며, 주관 부서 입장은 1회에 모든 안건이 심의되어 승인됨에도 불구하고 규정 상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1회는 반드시 회의가 진행될 것이고 이 때 심의를 완결해도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추가 회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약속해 주면 학생 위원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 회의 종료 시 차기 회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모든 위원들로 부터 동의를 얻어 추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1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으면 2회 회의 진행을 하겠다.

○ 위원이 추가 회의 필요 의견을 발의 할 경우 추가 회의 진행이 가능한가?

- 추가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안건이 있어야 하며 위원들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규정(안)에 따르면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이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거수투표를 진행할 것을 발의하니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여 거수투표를 진행하다.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부결됨을 선언하다. 또한 차기 회의부터는 비밀투표로 안건을 심의할 것에 대하여 설명하다.

4. 기타

○ 회의 개최 전 사전 자료 송부 및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진행되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안건 검토 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며 특별히 학생 위원의 경우 자료의 내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사전 회의를 통하여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4월 22일

위원장	임효창
위원	정소연
위원	하성호
위원	추시연
위원	유상아
위원	허예진
위원	김문규
위원	최애라
위원	최형심
기록	차은호

임효창 (서명)
정소연 (서명)
하성호 (서명)
추시연 (서명)
유상아 (서명)
허예진 (서명)
김문규 (서명)
최애라 (서명)
최형심 (서명)
차은호 (서명)